

대학원 농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2.22.

개정 2015. 3.12.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농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학과에서 추가로 정한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과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석사학위과정은 4회 박사학위과정은 6회 이상 발표한 자
2.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한 자
3. 박사학위과정은 학과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②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단, 불합격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의 결과는 5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출제위원은 과목별 전임강의강사가 출제하며 채점도 출제위원이 실시한다. 단, 해외 출장 시 다른 전임강의강사에게 채점을 양도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신설 2015.3.12.)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IBT) 55점 이상
3. TOEFL(CBT) 160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G-TELP LEVEL2, 55점 이상

제6조(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해당 과정 마지막 학기에 논문 계획 및 예비 발표를 학과 세미나 시간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7조(학술지 게재 의무조건)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혹은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 2편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해야 한다. 단,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5.3.12.)

제8조(논문지도위원회 구성)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3인의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제9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기준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개정세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해 종전 시행세칙을 따를 수 있다.